

비전임교원 인사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1.11.29		16		
2	2013.07.30		17		
3	2013.12.23		18		
4	2015.2.3		19		
5	2016.9.1		20		
6	2018.3.1		21		
7	2019.8.26		22		
8	2020.7.13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비전임교원 인사규정

제 1 장 총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7항에 의거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8.26>

제2조 (구분) 비전임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7조에 규정된 자로서 명예교수, 초빙교수, 겸임교원, 석좌교수, 계약제 연구교수 및 계약제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구분한다.
<개정 2019.8.26>

제3조 (비전임 교원의 정의) 비전임교원의 명칭과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명예교수 : 본 대학교에 20년 이상 근속한 교수로 교육 및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여 본규정 제2장 제5조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.
2. 초빙교수 : 교육계 또는 해당전공분야의 관련 기관에서 다년간의 교육 및 연구경력 또는 현장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본 대학교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.
3. 겸임교원 : 국가기관, 연구기관,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 소속된 자로서 산업현장의 전문지식과 관련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.
4. 석좌교수 : 외부기관, 개인기탁금 또는 교비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교육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.
5. 계약제 연구교수 (이하 “연구교수” 라고 한다.) : 교내 및 타 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는 자로서 연구에 전념하여 연구업적을 높이고 연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.
6. 계약제 산학협력중점교수 :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, 연구, 창업 및 취업지원 활동을 위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9.8.26]

제4조 (강의의 연령제한) 만 70세가 넘는 비 전임교원에게 정규과목의 강의를 배정할 수 없다. 단,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.

[중전 제3조의 2에서 제4조로 변경] <2019.8.26>

제5조 (임용절차) 명예교수를 제외한 비전임교원의 임용절차는 「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내규」를 따른다. <신설 2019.8.26>

제6조 (개별계약의 원칙) ① 명예교수를 제외한 비전임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근무시간, 근무조건이 기재된 문서로 본 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② 상기한 비전임교원 임용계약은 개인별로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.

<신설 2019.8.26.>

제7조 (결격사유) 『국가공무원법』 제 33의 결격사유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대학교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, 재직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 면직된다. <신설 2019.8.26>

제8조 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
[종전 제4조에서 제8조로 변경 2019.8. 26]

제 2 장 명예교수

제9조 (자격) ① 명예교수의 추대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1.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교수로서 재직 중 본 대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 및 학술분야의 업적이 뚜렷한 자
2. 본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자로서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
3. 국내외에서 해당 전공분야의 업적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총장이 특별히 추천하는 자

② 상기한 제 1항 제1호 내지 3호에도 불구하고 교원인사규정 제 47조 및 제 47조 2의 사실이 있거나, 사회적, 윤리적 물의를 일으켜 교수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예교수 추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[종전 제5조에서 제9조로 변경 2019.8.26.] <개정 2019.8.26>

제10조 (임용절차) 명예교수 임용은 해당 대학장(이하 대학장은 대학이 아닌 경우 학부(과)장을 말한다)이 추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후 총장이 임명한다.

[종전 제6조에서 제10조로 변경 2019.8.26]

제11조 (임용심사) 명예교수 임용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.

[종전 제7조에서 제11조로 변경 2019.8.26]

제12조 (구비서류) 명예교수를 추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.

1. 학술활동 및 교육업적 개요서
2. 본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적서
3. 해당 대학장 상신서 <개정 2020.7.13>
4. 해당 학부(과) 의견서 <개정 2020.7.13>

[종전 제8조에서 제12조로 변경] <개정 2019.8.26>

제13조 (강의 및 복무) ① 명예교수의 강의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, 필요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한 학기당 3학점 이내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.

② 명예교수로 재직 중 발표논문 또는 학술활동에서 한국항공대학교 명예교수임을 밝혀야 한다.

[종전 제9조에서 제13조로 변경 2019.8.26]

제14조 (처우) 명예교수가 강의를 담당할 경우에는 강의료지급규정에 의한다.

[종전 제10조에서 제14조로 변경] <개정 2019.8.26>

제15조 (임용기간) 명예교수의 임용기간은 10년으로 한다.

[종전 제11조에서 제15조로 변경 2019.8.26]

제16조 (면직) 명예교수로 임용된 자가 교원징계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는 면직될 수 있다.

[종전 제12조에서 제16조로 변경 2019.8.26]

제 3 장 초빙교수

[종전 제6장에서 제3장으로 변경 2019.8.26]

제17조 (자격) 초빙교수는 다년간의 교육 및 연구경력 또는 현장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19.8.26>

1. 고등교육법 제 16조 및 <대학교원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> 제 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<개정 2019.8.26>

2. 초빙분야와 관련된 직종에서 15년 이상의 현장 실무경험이 있는 자 <개정 2011.11.29>
[종전 제31조에서 제17조로 변경]

제18조(임용기간) ①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여 임용한다. 단, 관련법령에 따라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② 초빙교수는 학부(과)장의 추천을 받아 1년 단위로 재임용 할 수 있다. <항 신설 2020.7.13>
[종전 제34조에서 제18조로 변경] <개정 2019.8.26>

제 19조(강의 및 복무) ① 초빙교수는 학기별 주당 9시간 이하의 강의를 수행해야 한다. 단,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 학기별 주당 12시간까지 강의할 수 있다.
<개정 2019.8.26>

② 초빙교수 재직중 발표논문 또는 학술활동에서 한국항공대학교 초빙교수임을 밝혀야 한다.
[종전 제35조에서 제19조로 변경]

제 20조(보수 및 처우) ① 초빙교수의 보수는 별도의 계약으로 정하며,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는다. <개정 2019.8.26>

② 초빙교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급여 대상이 되고, 사회보장법에서 정의한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.
[종전 제36조에서 제20조로 변경] <개정 2019.8.26>

제 4 장 겸임교원

[종전 제7장에서 제4장으로 변경 2019.8.26]

제21조 (자격) ① 겸임교원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 기관, 연구기관,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 정규직원으로 상시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 이여야 한다.

② 임용대상자는 대학에서 강의할 과목이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직종에 근무하며,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본 대학교에서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한다.
단,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대학에서 강의할 과목이 부합하더라도, 본직기관의 유사직무 경력이 3년 미만이거나, 강의 과목이 순수학술과목인 경우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된다.

③ 임용대상자는 강의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, 전공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현직에 종사한 자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할 수 있다.
[종전 제37조에서 제21조로 변경 2019.8.26]

제22조 (직위) 겸임교원의 임용직위는 교원인사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겸임교수, 겸임 부교수, 겸임조교수로 구분한다.

[중전 제38조에서 제22조로 변경 2019.8.26]

제 23조(임용기간) ① 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여 임용한다. 단, 고등교육법 제 14조의 2 제 1항 및 제 17조 제 3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9.8.26>

② 임용기간 중 사직 또는 강의배정이 없는 경우 직전 학기 말일에 자동적으로 임용이 만료된다.

③ 겸임교원은 본직 기관장의 동의와 학부(과)장의 추천을 받아 1년 단위로 재임용 할 수 있다. <항 신설 2020.7.13>

[중전 제41조에서 제23조로 변경]

제 24조(강의 및 복무) 겸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겸임교원은 학기별 주당 9시간 이하의 강의를 수행해야 한다. 단,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 학기별 주당 12시간까지 강의할 수 있다. <개정 2019.8.26>
2. 겸임교원 재직중 발표논문 또는 학술활동에서 한국항공대학교 겸임교원임을 밝혀야 한다.

[중전 제42조에서 제24조로 변경]

제 25조(처우) 겸임교원의 처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 단, 강의담당시간에 따른 강의료는 강의료 지급규정에 의거 별도로 지급한다.

[중전 제43조에서 제25조로 변경] <개정 2019.8.26>

제 5 장 석좌교수

[중전 제4장에서 제5장으로 변경 2019.8.26]

제26조 (자격) 석좌교수는 국내외적으로 해당학문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덕망 있는 사회 저명인사로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기금 또는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이나 교비로 조성된 재원으로 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로 한다.

[중전 제18조에서 제26조로 변경] <개정 2019.8.26>

제27조 (임용기간) 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

[중전 제19조 ②항에서 제27조로 변경] <개정 2019.8.26>

제28조 (강의 및 복무) ① 한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.

② 석좌교수로 재직 중 발표논문 또는 학술활동에서 한국항공대학교 석좌교수임을 밝혀야 한다.

[중전 제20조에서 제28조로 변경 2019.8.26]

제29조 (처우) 석좌교수의 처우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임용계약 조건으로 따로 정한다.

[중전 제21조에서 제29조로 변경 2019.8.26]

제30조 (기금관리) ① 기금은 총장이 임용하는 기금운용 책임자가 별도로 관리하며 기금 운용에 따른 회계처리는 본 대학교 교비회계 처리 기준을 준용한다.

② 기금의 운용 과실금 일부는 석좌교수의 보수로 지출하도록 하며 과실금이 당해 석좌교수의 보수에 미달될 때에는 교비연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.

③ 기금운용 책임자는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당 회계연도 의 기금 운용 결산서 및 차기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[중전 제22조에서 제30조로 변경 2019.8.26]

제31조 (기금해체) 기금의 해체는 기탁자의 동의와 본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행한다.

[중전 제23조에서 제31조로 변경 2019.8.26]

제 6 장 연구교수

[중전 제8장에서 제6장으로 변경 2019.8.26]

제32조(자격)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총장의 재가를 받은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

[중전 제44조에서 제32조로 변경 2019.8.26]

제33조 (임용기간) ① 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사업계약기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.

② 임용기간 중 해당 연구과제가 종료되거나 연구교수의 원에 의거 사직할 경우 자동적으로 임용이 만료된다.

③ 연구교수는 해당 학부(과)장과 부속 연구소(원 또는 센터)장 중 1인의 추천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1년 단위로 재임용 할 수 있다. <항 신설 2020.7.13>

[중전 제47조에서 제33조로 변경] <개정 2019.8.26>

제34조 (직위) 연구교수의 직위는 연구교수로 한다.

[중전 제48조에서 제34조로 변경 2019.8.26]

제35조 (복무) ① 연구교수는 연구와 관련된 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소속 기관장이 필요 시 지정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③ 연구교수는 학부(과)에서 필요 시 한학기당 6학점 이하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.

[중전 제49조에서 제35조로 변경 2019.8.26]

제36조 (보수 및 처우) ① 연구교수의 보수(퇴직금 포함)는 해당 소속 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그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정하여 대학을 통하여 지급한다

② 건강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,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대학에서 부담하며, 그 재원은 산학협력단 과제연구비 또는 연구간접비 재원에서 지원한다. 단, 강의 담당시간에 따른 강의료는 강의료 지급규정에 의거 별도로 지급한다.

[중전 제50조에서 제36조로 변경 2019.8.26]

제 7 장 계약제산학협력중점교수

[중전 제10장에서 제7장으로 변경 2019.8.26]

제37조(자격) ‘계약제산학협력중점교수’란 산업체 경력(민간 산업체, 국가기관,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)이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.

[중전 제57조에서 제37조로 변경 2019.8.26]

제38조(임용기간) ① 계약제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업 계약 기간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, 임용기간중 해당 연구과제가 종료되거나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원에 의거 사직할 경우 자동적으로 임용이 만료된다.

② 계약제산학협력교수는 산학협력단장 또는 해당 학부(과)장의 추천으로 1년 단위로 재임용 할 수 있다. <항 신설 2020.7.13>

[중전 제60조에서 제38조로 변경 2019.8.26]

제39조(직위) 계약제산학협력중점교수의 직위는 계약제산학협력중점교수로 한다.

[중전 제61조에서 제39조로 변경 2019.8.26]

제40조(복무) 계약제산학협력중점교수는 전일제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[중전 제62조에서 제40조로 변경 2019.8.26]

제41조(임무) ① 계약제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학협력에 기여하며, 산학협력단장 또는 소속 대학(장) 및 관련 기관장이 지시하는 산업체와 학교의 상호 협력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전①항의 산학협동 활동 외에도 학부(과)에서 필요시 학기당 3학점 이하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.

[중전 제64조에서 제41조로 변경 2019.8.26]

제42조(보수 및 처우) 계약제산학협력중점교수의 보수는 별도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 단, 강의 담당시간에 따른 강의료는 강의료 지급규정에 의거 별도로 지급한다.

[중전 제65조에서 제42조로 변경 2019.8.26]

부 칙

1.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규정 폐지)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기존 명예교수임용규정, 대우교수임용규정, 석좌교수임용규정, 객원교원임용규정, 초빙교수임용규정, 겸임교원임용규정, 시간강사 위촉규정은 폐지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4.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 전 임용된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51조의 적용을 이 개정 시행일을 기점으로 5년간 유예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6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하되, 2012년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.
7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8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9.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 전 임용된 명예교수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.

10. ① (시행일)이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하되, 2015년 3월 1일 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한다.
② 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 전 임용된 초빙교수와 겸임교원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.
1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16학년도 2학기 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한다.
1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하되, 201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1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하되, 202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<별첨 3> <신설 2020.7.13>

학부(과)장 의견서

임용대상교원 소 속 : 대학 학부(과)
현 직위 :
임용 대상 직위 :
성 명 :

명예교수 대상자의 임용 상신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 합니다.

- 다 음 -

20 년 월 일

학부(과) : (인)

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